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주요 쟁점*

Major Issues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s a Tool
for Re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김용길*

Yong-Kil Kim

〈목 차〉

- I. 서론
- II.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주요 내용
- III.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주요 쟁점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조정합의, 상거래분쟁, 조정, 대체적 분쟁해결(ADR), 싱가포르 조정협약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재인, 법학박사, kimyongkil@daum.net.

I. 서론

오늘날의 사회는 정신적인 관념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하여 고도로 발달됨으로 인하여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입하고 있는 듯하다. 초연결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상당부분의 영역이나 요소들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즉시로 연결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에 연결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영역인 인격적인 면은 물론 통신망 등 사물영역인 비인격적인 부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사물인터넷(IOT)이 초연결사회의 핵심적인 기술인데 이를 통해 양산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는 빅데이터(Big Data) 분석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현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¹⁾

이러한 디지털 경제 및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세계 각국간의 무역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1조달러를 넘는 무역고를 기록하여 세계 무역 6대국의 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무역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으로 유용했던 조정이나²⁾ 중재³⁾ 등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⁴⁾ 소송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영향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mediation)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널리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조정은 그 절차에 따라 마련된 당사자간 합의가⁵⁾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 1) 디지털 환경하에서 빅데이터는 상호 생성과 교환을 통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칭하는 것으로 짧은 생성주기, 비정형성, 다양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장원규,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4집 제2호, 2018, 113면 이하.
- 2) 우리나라는 고조선시대 이전부터 사적인 분쟁을 법에 호소하여 해결하지 않고 부족 또는 마을 공동체의 풍습을 존중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제재에 따라 자치적으로 규율하는 중재 또는 조정방식을 통해 우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50년사』, 2016, 33면.
- 3) 한국의 마지막 임금인 지위리(智爲利)는 수많은 부족연맹국가로 이룩된 한국의 내부에서 생겨난 경제적 욕구와 정치적 욕심으로 야기된 끈질긴 분쟁을 화합과 덕목으로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지위리 천왕은 중대한 국사를 논의하기 위한 오가회의(五加會議)를 열어서 위기에 처한 한국을 환웅인 거발환에게 이양하였다. 이는 상고시대에 부족집단의 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재나 조정을 통하여 왕권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세계 최초의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김용길, “상고시대 이래 효사상과 분쟁 발생의 해결에 관한 고찰 - 중재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효문화』,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6, 23~24면.
- 4)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환인이 세운 환국인데, 이때부터 인류의 시원문명 시대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환국은 B.C. 7197년부터 B.C. 3897년까지 3301년간 장구한 세월 동안 지속되는 국가형태의 시단을 이루었다. 이 환국시대의 환인오훈(桓因五訓) 중에는 겸손하고 화평함으로써 다투지 말아야 한다(謙和不鬪)고 하여 평화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분쟁이 생기면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김용길, “삼성조시대의 법률과 효사상에 관한 고찰”, 『청소년과 효문화』,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4, 36-57면.
- 5) 이는 국내법의 개념으로는 “화해합의”라고 한다.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민법상 화해약정은 그 집행력이 없으므로, 화해약정에 따른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되면 다시 소송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화해약정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조정이 국제간에도 효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⁶⁾ 국제간 협약을 2018년 7월에 새롭게 마련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에 국적이 다른 국제적 성격을 갖는 조정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됨에 따라 조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2018년 12월에 UN 총회는 UNCITRAL이 제안한 동 협약안을 채택한 후에 2019년 8월 7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인도, 칠레, 이스라엘 등 46개국이 국제조정제에 관한 싱가포르협약(Singapore Convention)에 서명하였다. 이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정식 명칭은 “조정으로부터 도출된 국제적 조정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이다. 이러한 국제조정제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이하 경우에 따라 ‘싱가포르 조정협약’ 또는 ‘조정협약’ 또는 ‘협약’이라 함)은 조정의 결과물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상사분쟁들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국제 조정제에 따른 결과물을 당사국 또는 제3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주요 내용

1. 의의

우리나라는 국제상거래에서 조정을 통하여 상거래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상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7일에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서명하였다.⁷⁾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제정 및 발효되었다는 것은 상사분쟁을 ADR로 해결하기 위한 두가지 큰 축인 중재제도와 조정제도가 국제적으로 정립되었음을⁸⁾

여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민,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1260면.

6) UNCITRAL은 현재 60여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7) <https://www.singaporeconvention.org/official-signatories.html>.(2022.2.2.검색); 2019년 9월에 Armenia, Ecuador, Chad, Gabon, Guinea-Bissau 5개국 그리고 2020년 1월 28일에 Rwanda가 서명함으로써 서명국의 수는 현재 55개국이다.

8)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ADR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Newyork Convention)에 따라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며,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따라 조정합의의 국제적인 집행력을 갖게 되었다.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UNCITRAL은 그동안 조정제도에 관한 규범으로 1980년에 ‘UNCITRAL 조정규칙’⁹⁾을 마련하였고, 2002년에는 ‘UNCITRAL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모델법’(‘모델조정법’이라 함)을¹⁰⁾ 채택하였다. 이 모델조정법 제14조에서는 조정을 통하여 마련된 당사자들간의 ‘조정 합의’에 대하여 법적구속력 및 집행력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그 집행은 각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델조정법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18년까지 UNCITRAL의 실무반(Working Group II)의 준비를 거쳐 2018년 2월에 열린 제68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었고, 2018년 6월 26일에 열린 제51차 UNCITRAL 회의에서 조정협약안이 승인되었다.

그동안 조정제도는 분명히 좋은 분쟁해결기구임에도 그 고유의 특성상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으로서 매우 좋은 해결 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2.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내용

(1) 협약의 적용 범위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에 의하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조정합의(settlement agreement)에 적용되는데, 이 조정합의는 국제적(international)이고 상사적(commercial)이어야 한다. 즉 먼저 조정협약의 적용되는 주체는 국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¹¹⁾ 동 협약은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적용되는데, 조정합의를 구하는 당사자들은 타국에 그들의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¹²⁾

이는 조정합의에 대하여 양당사자들의 영업소(place of business)가 적어도 다른 국가에 있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가 조정합의에 따른 의무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는 국가 또는 조정합의의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와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당사자가 2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들

9) UNCITRAL Conciliation Rules,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1980Conciliation_rules.html, 2022.2.2.검색).

10)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http://www.uncitral.org/uncitral/uncitral_texts/arbitration.html, 2022.2.2.검색).

11)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내용은 조정모델법 2002년의 제1조 4항 및 조정모델법 2018년 제3조 2항과도 동일하다.

12)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1조 제1항 a호.

의 상거소지(habitual residence)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¹³⁾ 아울러 조정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으로 상사성(commercial dispute)과 서면성을 요하고 있다.¹⁴⁾ 상사성은 조정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조정협약의 적용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조정을 통한 조정합의의 결과물이 상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기관이 상업활동의 주체로 상거래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인 내용은 아니다. 국제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무역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상사분쟁의 형식요건을 명시하여 국제적인 보편성과 적용범위를 특정함으로써 국가 사이의 사법제도 또는 문화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¹⁵⁾ 그리고 조정합의는 조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로써 서면(writing)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즉 조정합의는 기록물의 형식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인 통신방식도 가능하다. 조정협약 제2조 2항에서 “조정합의는 그 내용이 어떤 형태든지간에 기록되면 ‘서면’ 합의로 된다. 조정합의의 서면성(in writing) 요건은 그에 포함된 정보가 추후 기준(reference)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으면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방식에 의하여도 충족될 수 있다.”¹⁶⁾¹⁷⁾

(2) 조정협약의 배제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이 협약을 배제하는 조정합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법원이¹⁸⁾ 승인하는 경우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정합의 및 법원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기록되어 집행력이 부여된 조정합의는 이 협약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일방당사자가 소비자인 때에는 조정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가족, 상속, 고용 등과 관련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판결 또는 중재판정으로 집행력이 부여된 조정합의

법원의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조정합의도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조정합의는, 2005년 6월에 채택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법원합의의 선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의 내용을 제외함

13)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2조 제1항 b호.

14)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1조 제1항.

15) 유병욱,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 84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19, 155면.

16) 전자통신은 당사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수단으로 진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데이터 메시지는 전자적인 데이터 교환(EDI), 전자메일, 텔레그램, 텔렉스 혹은 팩스 등을 포함하여 전기, 자기, 광학 또는 유사한 수단에 의해 발생, 전송, 수령 및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17) 우리나라 중재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電報, 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에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18)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competent authority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조정합의의 원용(involve)에 따른 승인 및 집행의 권한을 가진 법원이나 권한을 가진 중재판정부가 될 것인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집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법원으로 해석 한다.

으로써 당사자들이 하나의 조정합의에 두 가지 집행청구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국내적으로도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규정에서 다시 다룰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원리는 행정형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은 조정절차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정에 따른 조정합의가 중재판정으로 기록되어 집행력이 부여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 이는 뉴욕협약과 적용범위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이나 기관 등에서 내린 중재판정은 뉴욕협약과 각 국가별로 규정된 중재법으로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재판정으로 기록된 조정합의에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중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분쟁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제1조 제2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개인이나 가족 또는 가계상의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거나 가족법(family), 상속법(inheritance), 노동(employment)법에 관련된 경우, 즉 일방당사자가 소비자인 소비자분쟁, 가사 및 노동분쟁 등과 관련된 조정합의에는 그 적용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오늘날에는 대기업이나 금전적으로 강자들이 주도하는 상거래에서, 소비자는 상당히 열악하고 불평등한 협상력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합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분쟁 등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분쟁은 점점 더 늘어나지만 이러한 분쟁들은 일반적인 성격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각국의 특색에 맞도록 특별법의 영역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법이나 상속법이라든지 근로관계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적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분쟁 역시 개인의 사생활과 연관되어 대단히 민감한 영역으로써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상거래상 계약문제와는 달라서 조정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관련 분쟁도 노동자와 사용자가 그 협상 지위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조정합의의 유효성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감한 문제는 계약법의 영역보다는 각국의 실정에 맞도록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특히 국제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협약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도 있다. 즉 각국의 국가정책과 정치철학, 통치이념 등이 관여하는 사안에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협약의 적용원칙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의하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정합의의 승인이나 직접적인 집행은 조정합의 당사자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느 협약당사국에서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3조 제1항은 조정합의의 집행에 대하여 정하고, 제2항에서는 조정합의의 승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먼저 체약 당사국들은 동 조정협약에 정한 적용절차에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합의를 자국 내에서 집행할 것을 약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따라 조정합의의 집행을 청구하는 국가에서 조정합의의 집행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조정내용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만,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조정합의의 집행문제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정합의에 집행에 대해서는 각국이 이행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¹⁹⁾ 따라서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각국의 법이 적용되는데, 구제(relief)를²⁰⁾ 청구받는 국가는 조정합의의 집행을 위한 집행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협약당사국들은 조정합의를 집행해야 하고 조정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원용(involve)을²¹⁾ 허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만일에 당사자 일방이 이미 당해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원용하는 경우에, 당사국들은 협약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항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²²⁾ 즉 조정합의로 해결된 사건을 일방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경우에, 조정합의를 이루었다고 원용하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이 이미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적용범위 등의 요건을 갖추으로써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때에 협약국들은 해당사건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조정합의를 승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따른 조정합의의 증거와 요건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조정합의의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19) 당사국들은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따라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와 유사하다.

20) 이재민, 전계논문, 1268면 및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제도-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59면에서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relief를 ‘구제’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정선주, 싱가포르협약과 조정결과의 승인집행, 「민사소송」 제24권 제2호, 14면에서는 구제(relief)는 승인(recognition)과 집행(enforcement)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구제’ 또는 ‘승인과 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1)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3조 제2항의 ‘involve’를 ‘원용’(이재민, 전계논문, 1268면 ; 박노형, 전계서, 47면)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승인에 상응하는 개념(정선주, 전계논문, 16면)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원용’으로 해석 한다.

22)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3조 제2항.

(4) 조정합의의 집행절차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당사국들은 스스로의 절차규칙에 따라 조정합의를 집행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동 조정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 조건으로 집행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즉 동 협약에 따른 집행을 위한 청구 절차는 집행절차에 따른 국내법의 규정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정합의의 당사자가 법원에서 집행과 승인 등 구제(relief)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4조에 열거한 규정대로 적어도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조정합의서와 그것이 조정합의로 이루어진 증거를 제출하면 그러한 조정합의를 승인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국 법원은 다시 다른 추가적 요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정합의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조정합의는 당사자의 서명이 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이 한하며, 그러한 합의가 조정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서명과 합의서는 서면이나 전자적인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는 조정합의에 구속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정합의는 문제된 분쟁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를 해결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간에 사건에 관한 해결 내용이 포함하지 않은 합의 또한 조정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이룬 내용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이후에 합의하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한 합의는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결국 조정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²³⁾

조정합의를 원용하는 당사자는 승인 및 집행이 청구되는 협약당사국의 법원에 조정에 의하였다는 증거로 조정인의 서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²⁴⁾ 조정인은 조정이 수행된 사실을 기재한 서류에 서명을 하면 된다. 아울러 조정합의가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또 다른 증거로써 조정을 담당한 기관의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로 승인 및 집행이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의거하여 조정합의를 원용하는 당사자는 승인 및 집행이 청구되는 협약 당사국의 법원에 당사자들이 서명한 조정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법원은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제반 요건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²⁵⁾ 이 경우에 제반요건은 협약의 적용범위, 제2조의 정의, 제4조의 조정합의의 요건, 제5조의 구제허용의 거부사유, 제8조의 유보선언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원은 해당 권한을 갖는 중재판정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언어이다. 조정합의는 승인 및 집행이 청구되는 협약 당사국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그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²⁶⁾

23) 이재민, 전계논문, 1269면.

24)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4조 제1항(b)(i)호.

25)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4조 제4항

(5) 구제허용의 거부사유

1) 의의

싱가포르 조정협약에서 당사자국가는 조정합의의 구제 거절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된 사유에 의해서만 그 구제를 거절할 수 있다.²⁷⁾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5조의 의하여 협약당사국의 법원은 구제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는 조정협약 상 항변사유를 열거적으로 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조정합의에 관한 집행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항변에 따른 구제허용 거부사유를 밝혔고, 제2항에서는 구제가 이루어지는 협약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의 직권에 따른 거부 사유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구제허용 거부사유는 두가지 경우로 집행을 청구하는 때와 청구에 대한 방어로써 당사자가 조정합의를 원용하는 때에 적용된다.

2) 조정합의와 관련된 거부사유

먼저 상대방의 항변에 따른 집행거부 사유로써 첫째는 조정합의의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이다. 협약당사국의 법원은 조정합의를 이를 때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under some incapacity)이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한능력자의 판단기준은 뉴욕협약과는²⁸⁾ 달리 이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뉴욕협약과 준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다.²⁹⁾ 따라서 조정합의에 대하여 구제가 청구된 협약당사국의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해결된다.

둘째 조정합의가 무효 또는 실효이거나 이행불능인 경우이다. 근거가 되는 조정합의가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준수한 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표시가 없다면 제4조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이 청구되는 협약당사국의 법원이 적용할 수 있다고 간주한 법에 따라 무효(null and void)이거나 실효(inoperative)이거나 이행이 불능(incapable of being performed)하면 동 법원은 해당 조정합의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조정합의의 거부사유를 결정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집행국의 국제사법이나 기타 적절한 준거법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조정합의가 중국적이지 않거나 구속력이 없는 경우이다. 즉 조정합의가 분쟁의 중국적인 결정이 아니거나 조정합의의 의무가 당사자간에 구속력이 없는 때인데, 이 경우에 집행을 반대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조정합의가 나중에 수정된다면 이는 중국적인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조정합의가 중국적인지 또는 구속력 여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거가 되는 조정합의가 그 후에 수정되는

26)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4조 제3항

27) 이는 중재제도에서 뉴욕협약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절사유와 유사하다. 유병욱, 전게논문, 158면.

28) 뉴욕협약 제5조 제1항(a)는 “제2조에서 정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under some incapacity)이었던 자”라고 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321면.

29) 오현석·김성룡,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개정 동향”, 「한국무역학회」, 2020, 208면.

(subsequently modified) 경우에 법원은 본래의 조정합의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중국적인 조정합의를 제출한다면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한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나중에 수정된 합의가 본래의 조정합의를 완전하게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조정합의에서의 의무가 이미 이행되거나, 조정합의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당사자들간에 조정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한(performed) 경우에는³⁰⁾ 다시 다툼을 해결해 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집행 및 승인해야 할 조정합의의 의무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³¹⁾ 어떠한 구제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정합의에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문언이 있다든지 또는 이행기일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손해배상금액이 없는 경우에,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 및 집행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다섯째 조정합의의 내용에 반하는 구제를 하는 경우이다.³²⁾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조정합의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조정합의의 내용에 반하는 집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중재신청을 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인하여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아울러 조정합의의 내용이 조건부이거나 또는 상호간 의무이행 또는 기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자치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조정인의 행위에 따른 거부사유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조정합의와 관련된 조정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거부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다. 즉 조정인이 조정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조정인에게 공평성이나 독립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경우이다. 먼저 조정인이 그 자신이나 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그러한 심각한 위반이 없었더라면 당사자가 조정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은 조정합의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³³⁾ 즉 조정인이 조정에 적용하는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러한 중대한 위반이 조정합의를 이루는 결정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조정을 수행하는 기관이 정하는 조정규칙이 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그러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조정합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절차(due process)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조정인의 독립성, 공평성, 비밀유지 등도 중요한 요소들이다.³⁴⁾ 이러한 기준들을 위반하였다고 원용하는 당

30)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5조 제1항(c)(i)

31)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5조 제1항(c)(ii)

32)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5조 제1항(d)

33)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5조 제1항(e)

사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중대하지 않은 사소한 위반으로는 집행이 거부되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조정인이 조정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이 제기되는 사정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비공개가³⁵⁾ 없었다면 당사자가 조정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로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 법원은 조정합의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³⁶⁾ 따라서 조정인은 조정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자신의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등에 정당한 의심이 들만한 모든 정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합의의 집행이 거부되려면 조정인의 해당 정황에 따른 비공개를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조정합의를 하지 않았을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조정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미리 조정인이 공개하여야 할 정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거부사유는 되지 못한다.

(4) 공공질서와 관련된 거부사유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법원이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두가지 경우에³⁷⁾ 대하여 구제허용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원리상 당사자가 결국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공공질서의 문제는 국가마다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정지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공질서(public policy)라는 개념은 본래 영미법에서³⁸⁾ 발달한 용어로서 외국판결의 국내집행의 거부 사유 등 국제사법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대륙법계에서는 공서양속(ordre public)이란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공서양속은 공공질서의 개념보다 탄력적이고 넓은 의미로서 국내법상 사인(private citizen)이 처분할 수 없는 강행법규성 또는 사적자치의 한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³⁹⁾

첫째 조정협약 제4조에 따라 구제가 청구되는 협약당사국의 법원은 구제 허용이 그러한 당사국의 공공질서에 위반할 경우에 구제를 거절할 수 있다.⁴⁰⁾ 공공질서는 국가의 공공정책과 법에 반영된 사회의 근본이익(fundamental social interests)의 보호를 포함하는데,

34) 우리나라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도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중재법 제10조(b).

35) 저작권법 제115조.

36)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5조 제1항(f)

37) 뉴욕협약 제5조 제2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거부할 수 있다. (a)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하에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5조 제2항과 유사하다.

38) The Restatement, Second, Conflicts of laws §98(g); Tahan v. Hodgson, 662 F. 2d 862(D.C.Cir. 1981).

39) 뉴욕협약에서도 두가지 개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목영준·최승재, 전게서, 343면.

40)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5조 제2항(a)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b)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에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구제 허용의 거부사유로서 공공질서의 위반이⁴¹⁾ 되는 여부는 협약당사국의 법원이 결정하는데 이는 국가마다 다를 수가 있다.

둘째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분쟁의 대상이 그러한 협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구제를 거절할 수 있다.⁴²⁾ 조정합의의 구제허용을 거부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합의로 해결된 분쟁대상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정이 허용되지 않음을⁴³⁾ 증명해야 한다. 먼저 조정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협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독점금지법 분야, 특허무효확인 청구 등과 당사자에 의하여 처분가능성이 없는 지적재산권 분야,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하여 각종 보호 조항을 둔 증권거래법 분야,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분야, 노동분야, 소비자분쟁 분야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정가능성의 개념이 국가의 목적이나 정책을 이를 목적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을 제한한 것이라면 조정가능성은 결국 공공질서에 포함될 것이다.

(5) 유보선언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두가지 경우에 유보(reservation)를 허용하는데 유보는 조약 체결과정이나 승인시에 국가가 당해 조약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당해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인 선언을 말한다. 이러한 유보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에서 의무의 변경 등 유연성을 가지지만 특정 국가에 대하여 특정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일체성을 해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유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는 의견이 다양하였다. 최종적으로 협약당사국이 스스로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정협약은 조정당사자가 조정협약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합의시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두 가지 유보만을⁴⁴⁾ 협약당사국에 허용하도록 하였다.⁴⁵⁾

첫째는 협약당사국에 대한 적용의 배제이다. 협약당사국은 유보선언의 범위내에서 스스로 당사자이거나 어느 정부기관 (governmental agencies) 또는 정부기관을 대신하는 자 (person)가 당사자인 조정합의에 관하여는 조정협약을 적용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⁴⁶⁾ 예를 들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협약당사국가의 정부나 정부기관의 면제를 얻기

41) 예를 들어 도박계약의 경우 도박자금을 지급을 명하는 경우, 부채계약의 명목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뇌물의 지급이나 금지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 등

42)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5조 제2항(b)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a)과 제2조 제1항에 토대를 두고 있다.

43) 발명진흥법 제44조.

44)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8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45) 이재민, 전게논문, 1273면.

46)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8조 제1항(a);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5월 5일에 이 유형의 유보를 선언하였다.

위하여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

둘째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협약당사국은 조정협약의 당사자들이 조정협약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⁴⁷⁾ 이러한 유형의 유보는 조정합의의 당사자들이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적용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당사자 자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한다.⁴⁸⁾ 이러한 유보선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⁴⁹⁾ 유보를 한 후에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⁵⁰⁾ 싱가포르 조정협약 당시에 이루어진 유보선언은 당해 협약당사국에 대하여 조정협약의 비준 그리고 수락 또는 승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발효된다.⁵¹⁾

(6) 기타 사항

조정합의가 원용되려고 하는 협약당사국의 법률이나 조약(treaties)이 허용하는 방식과 범위 안에서, 어느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y)가 당해 조정합의를 활용하는 어떠한 권리도 빼앗아서는(deprive) 안된다.⁵²⁾ 조정협약의 수탁기관(depositary)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되는데,⁵³⁾ 조정협약이나 그 유보 또는 철회(withdrawal)는 당해 협약당사국에 대한 조정협약, 유보 또는 철회의 발효일 이후에 맺은 조정합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⁵⁴⁾ 아울러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6조는 동시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조정합의에 관련된 신청이나 청구가 조정협약 제4조에 의거하여 청구되고 있는 구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원(court),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 또는 다른 당국(competent authority)에 제기되면, 그러한 구제가 청구되는 협약당사국의 당국이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에 결정을 연기할 수도 있고, 일방당사자의 요청으로 상대방에게 적합한 담보를 제공토록 할 수도 있다.⁵⁵⁾

한편,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3개국의 비준으로 발효한다. 즉 조정협약은 비준(ratification),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 혹은 가입(accession)의 세번째 국가의 문서가 기탁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한다.⁵⁶⁾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2020년 2월 25일에 싱가포르, 2020년 2월 25일에 피지, 2020년 3월 12일에 카타르가 비준함으로써 그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9월 12일에 발효되었고, 당일에 곧바로 UN에 등록하였다.

47)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8조 제1항(b); 이란은 2019년 8월 7일에 이 유형과 첫째유형의 유보를 선언하였다.

48) 박노형, 전게서, 93면.

49)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8조 제3항.

50)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8조 제5항.

51)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8조 제3항 2문 및 3문.

52)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7조

53)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10조

54)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9조

55)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6조

56)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14조 제1항

Ⅲ.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주요 쟁점

1. 조정절차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그의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⁵⁷⁾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사조정법 이외에 조정절차에 관한 기본법이 없으므로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수용하려면 그 내용을 담은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⁵⁸⁾

즉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국내에 제대로 정착되려면 조정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대부분 화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수출입 무역 6대국에 걸맞는 분쟁해결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조정형태에 따른 법적인 효력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⁵⁹⁾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⁶⁰⁾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조정을 통하여 성립된 조정합의에 대하여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결과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정기본법에는 조정합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선 중재법의 중재개념과⁶¹⁾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ADR과의 정합상 바람직할 수도 있다. 즉 “조정합의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⁶²⁾

조정절차에 있어서도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게 개별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간의 조정합의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에서도 싱가포르 협약의 비준동의와 이행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각계 의견을 청

57)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는 2020년 2월에 “2020년 싱가포르 조정협약법(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ct 2020)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다.

58) 전상수, “국제상사분쟁의 조정 관련 싱가포르 협약의 주요 내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2019, 46면.

59) 김용길, “知識財産權紛爭의 裁判外 解決制度에 관한 研究 -調停과 仲裁를 中心으로”,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91면.

60) 법무부는 2021년 3월부터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TF를 구성하였다. 이인혁 기자,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할 TF 발족...조정 활성화되나”, 한국경제신문, 2021.03.10.일자.

61) 중재법 제3조 제2호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2) 정선주, 전계논문, 11면

취하고 싱가포르 협약의 비준동의와 입법에 관한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마련하고 있다.⁶³⁾

2. 용어의 개념 정립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협약당사국들간에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정합의(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서도 국내적으로 이미 조정합의로 번역하는가 하면 화해합의로도⁶⁴⁾ 번역하고 있다. 법률용어는 용어사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⁶⁵⁾ 조정합의라는 용어가 새로운 개념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확한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적(international)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정립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국내 상사분쟁의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국내적인 성격을 가진 분쟁도 역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조정협약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국제거래가 반드시 양국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합의에는 많은 국가들이 관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정합의가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조정의 장소는 국제적인 성격을 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정합의의 상호적 집행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의한 승인과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합의에 따른 조정절차는 조정인의 조정자격이나 특정 조정규칙, 특정 조정기관 등 국내법의 준수를 요하지 않는다.⁶⁶⁾

셋째 상사적(commercial)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정립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상사적인 개념에 대하여 용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상사적인 조정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개인적인 목적과 관련되면 조정협약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어떠한 방식이든지 제3자가 분쟁해결에 관여하면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일시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때에도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사적인 개념은 소비자분쟁, 노동분쟁, 가족 또는 상속분쟁 등을 제외한 상업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적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법적용이 민감한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6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는 12월 20일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조만간 국회는 싱가포르 협약의 비준동의와 이행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싱가포르 협약의 비준동의와 입법에 관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명 기자, 법률신문사, 2021.12.20자 기사, jman@lawtimes.co.kr.

64) 박노형, 전게서, 22면; 이재민, 전게논문, 1265면.

65) 향후 대두되는 가장 큰 과제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포함된 핵심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재민, 전게논문, 1275면.

66) 박노형, 전게서, 24면.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3. 법원의 집행 문제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민간형 조정의 성격을 지닌 조정으로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조정에 따른 조정합의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법원 등에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⁶⁷⁾ 즉 협약에 따라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는 집행물이 소재하는 협약당사국의 법원에 집행을 직접 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사적인 계약의 영역에 머물렀던 당사자간의 조정합의가 중재판정에 준하는 지위에 상당하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⁶⁸⁾ 그러나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발효되고 또 그 이행과정에서 집행국의 법원의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⁶⁹⁾ 일단 조정이 자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자국법에 의거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수 있으나, 일방당사자가 조정합의를 제3국에서 집행을 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때 집행요청을 받은 외국 법원은 자국 내에서 판단되지 않은 조정 결과를 집행하여야 하는 미묘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여전히 조정합의의 집행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구제허용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승인되며 재판이 달리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법원에 승인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불복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정합의서에 집행가능성을 부여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일방당사자가 합의조정 내용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집행허가를 법원에 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 법원은 합의조정서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에 그쳐야 할 것이다. 집행이 신청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조정합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집행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합의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7)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3조 제2항은 조정으로 상사분쟁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국은 자국의 절차법규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원용(involve)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68) 정선주, 전계논문, 14면.

69) 조정을 통해 외국에서 도출된 당사자 사이의 조정합의에 대해서 제3국인 집행국가 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신청한 후 제3국 법원 판결이나 결정으로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대립하였는데, 결국 조정이 진행된 국내 법원의 검토나 평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재민, 전계논문, 1279면.

4. 조정인의 윤리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조정인 및 조정절차 중에서 조정인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조정인이 중립성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체허용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위반내용이 그러한 거부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조정합의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단순한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조정은 대체로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조정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편견, 조정 당사자에게 자문을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저지를 수도 있다. 조정인은 자신의 중립성, 공평성이나 독립성에 관한 정당한 의구심이 제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조정 수행 중에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조정인은 금전이나 직업 및 사회 관계 등으로 당사자들에게 이득을 주고 받거나 법률자문을 해준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우선 조정인은 객관적인 능력이나 자격에 관한 공개를 요구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들에게 조정인의 공정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게 된다.

둘째 조정인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무를 진다. 공평성은 조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면서, 편견이 없어야 한다. 조정인은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나 그 당해 분쟁에 대해서 의견을 함부로 내거나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조정인은 조정활동 중에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이 때 개별면담(caucus)에서 지득한 일방당사자의 정보에 대해서도 그의 허락없이 타방당사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나 조정인의 행위기준이 되는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조정을 위한 지원기반의 조성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잘 이행하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위한 인적지원, 물적시설, 제도적 정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조정에 관한 심리절차의 보완이 요구된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COVID19로 인하여 출국이나 국제적인 조정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의 심리절차를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령들도 정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입국 및 출장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하여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경제적 효과도 줄 것이다.

둘째,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불필요하지만,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독립적인 국제조정기관이 설립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충분한 지원과 이용을 통하여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특히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국내법의 제정 등 법령 정비는 하루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하이브리드형(혼성분쟁해결)⁷⁰⁾ 등 다양한 분쟁해결방안의 도입이 요청된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통해서 ADR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조정이 상사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널리 확대되고 있다. 조정의 집행력이 보장되는 획기적인 국제조약이 탄생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재와 조정이 결합된 조정·중재(Med-Arb⁷¹⁾)이나⁷²⁾, 간이심리(Mini-Trail, Neutral Advisor),⁷³⁾ 사적판결(Private Judging, Rent-a-judge),⁷⁴⁾ 최종제의 중재(Final Offer Arb),⁷⁵⁾ Multi-door Courthouse⁷⁶⁾ 등이⁷⁷⁾ 있다.⁷⁸⁾ 우리나라도 이러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를 점차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정기구의 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다양화 측면에서 조정기구를 통일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조정기구들은 조정 본래의 본질이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조정내용을 잘 소화하여 운영한다거나 조정을 진행할 기본적인 역량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형 조정은 조정기구를 단일화하여 조정의 효율성

70) 분쟁해결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경우를 혼합분쟁해결과정(mixed mode dispute resolution process) 또는 혼성분쟁해결(hybrid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한다. 박노형, 전게서, 36면.

71) 미국에 있어서 조정제도는 하나의 지역사회 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되어 지역사회조정센터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면서 법원, 정부, 학교, 민간기업 등으로 확산되어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용길,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조정산업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자료(2018.5.23., 국회의원회관), 2면; 조국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미국의 사법중재 및 조정서(JAMS)와 미국 중재협회(AAA)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9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06면에서 재인용.

72) 조정·중재(Med Arb)는 처음에는 제3자가 조정인의 역할을 하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 Arb)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2014, 86면.

73) 합의를 통해 당사자들간에 선임한 중립적인 조인자(neutral advisor)에게 소송의 판결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제도이다.

74) 소송이 계속 중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판사가 사인인 제3자(referee)에게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그 후에 그 판정 결과를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미국 California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75) 임금 협상 등에서 주로 이용되는데,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때에 중재인은 양방의 요구조건 중 일방의 요구조건 그대로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는 제도이다.

76) 하나의 법원 내에 조정, 중재, 사법재판 기타 다양한 ADR제도를 마련한 후에 당사자로 하여금 그 방법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77) 미국에는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와 사법 중재 및 조정 서비스(Judicial Arbitration Mediation Service, JAMS)는 조정에 특화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JAMS는 하나의 영리법인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입증된 전직 법관 및 변호사를 포함하여 280명 이상의 회원이 전업 중립인(neutrals)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JAMS는 반독점, 건설, 엔터테인먼트, 고용, 스포츠, 환경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조국현, 전게논문, 206~207면; 박철규,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도서출판 오래, 2016, 137~138면.

78) 목영준·최승재, 전게서, 5~6면.

을 보다 높임으로써,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조정제도를 이해하고 분쟁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조정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조정절차를 담당하는 요원들은 전문적인 사무능력과 국제조정에서 필요한 언어능력,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능한 조정인들을 파악하고 리스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⁷⁹⁾ 이를 통해서 조정교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조정을 경험한 일정한 인원들만으로 조정이 독점되어서는 안되므로 교육과정 및 자격과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제적인 조정인을 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결론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국제적으로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진일보를 이루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내적인 조정의 효력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뉴욕협약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제분쟁 해결제도도 도입되어 조기에 정착시키고 그의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협약당사국들간에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용어에 대한 개념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정협약은 민간형 조정의 성격을 지닌 조정으로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조정에 따른 조정합의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법원 등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법적절차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충분한 지원과 이용을 통하여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분쟁해결방안의 도입이 요청되며, 조정기구의 통일도 요청된다. 조정제도를 이해하고 분쟁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조정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조정제도가 국제적으로 보다 확산되어 국제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적절하게 이용되기를 바란다.

79) 김용길, 전계논문, 90면.

참고문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179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9.
- 김갑유·임수현·김홍중·김준우 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6.
- 김세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조정·화해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재논의”, 「토지공법연구」 제64집, 2014
- 김 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제14권 제1호, 2010.
- 김용길, “상고시대 이래 효사상과 분쟁발생의 해결에 관한 고찰 - 중재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효문화」,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016.
- 김용길, “知識財産權紛爭의 裁判外 解決制度에 관한 研究 -調停과 仲裁를 中心으로”,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 김용길, “중국의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0.
- 김용길,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조정산업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자료」, 국회의원회관, 2018.5.23.
- 김용길, “삼성조시대의 법률과 효사상에 관한 고찰”, 「청소년과 효문화」,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014.
-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 박노형·이로리, 「유럽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 박준모,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방향성과 기준의 제시”,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제97호, 2019.12.
- 박철규,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도서출판 오래, 2016.
- 석광현,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4.
- 석광현,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상사중재”, 「법학」 제5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손경현, “분쟁해결합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法曹」 제675권, 2012.
- 신희택·김세진,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4.
- 신희택,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통상법률」 제133호,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7.
- 오현석·김성룡,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개정 동향”, 「한국무역학회」, 2020.

- 유병욱,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84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19.
- 유병현, “재판상 화해 간주 효력의 기판력과 그 범위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 2043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제20권 제2호, 2016.
- 이로리, “‘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2009.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1판」, 박영사, 2017.
- 이양·김용길, “중국의 2021년 중재법 개정안과 그 시사점”, 「중재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21.
- 이재민,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비교사법」, 2018.
- 이호원, 「중재법연구」, 박영사, 2021.
- 이효영,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의 의미와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2021.
- 임상혁, “법원의 ADR”, 「민사소송」 제12권 제2호, 2008.
-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 장완규,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4집 제2호, 2018.
- 장은희·황지현, “조정에 의한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고찰”, 「무역학회지」, 2018.
- 전상수,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2019
-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17
- 정용균. “미국의조정-중재(Med-Arb)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권 제1호, 2014.
- 조국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미국의 사법중재 및 조정서(JAMS)와 미국 중재협회(AAA)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9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조수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지위의 보장”, 「민사소송」 제19권 제1호, 2014.
- 주인, “민사조정의 활성화와 사적자치”,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
- 함영주 외 4인,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5.
- 호문혁, “판결과 ADR의 정립에 관한 연구”, 「법학」 제5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ABSTRACT

Major Issues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s a Tool for Re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Kim, Yongkil

Today's society appears to be entering a hyper-connected society due to mental notion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being converged for advanced development. Trade betwe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amidst the digital economy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eing accompanied by a growing number of trade disputes. Appropriately resolving disputes is crucial for corporate growth, and ADR is drawing attention as a more reasonable solution between interested parties compared to lawsuits. This also applies to international trade as there is growing movements to resolve disputes between parties more efficiently and feasibly through mediation. The adaptation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implementation in a third country for settlement agreements drawn up through such international mediation is a new and unprecedented attempt. In other words,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looks to re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y granting executive force on the outcomes of mediations. However, a system to solve various legal issues must be put into place to execute the outcomes in the respective country or third country, and a variety of tools for this are necessary.

Key Words : Settlement Agreements, commercial disputes, mediation, ADR,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